

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1조”를 “「유아교육법」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1조”로, “결정하여야”를 “결정해야”로 한다.

제2조의2 및 제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학교급식 대상) 법 제4조제1호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”이란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중 원아 수(「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 별표 1의3에 따라 매년 10월에 공시되는 연령별 원아 수 현원의 합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100명 미만인 유치원을 말한다.

제8조의2(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배치기준) ① 법 제4조제1호 및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에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영양교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(국립·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「교육공무원임용령」 제9조제1항에 따라 영양교사로 선발된 사람으로 한다)을 1명 이상 교사로 두어 제8조 각 호의 직무를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아 수가 200명 미만인 유치원으로서 같은 교육지원청(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을 말

한다)의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2개의 유치원마다 공동으로 제1항에 따른 교사를 1명씩 둘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학교급식의 운영원칙) ① (생 략) ②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 의 사항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(이하 “학교운영위원회”라 한 다)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하여야 한다. 1. ~ 9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조(학교급식의 운영원칙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 「유아교육법」 제19 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 회 또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 31조----- ----- 결정해야 -----. 1. ~ 9. (현행과 같음) 제2조의2(학교급식 대상) 법 제4 조제1호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” 이란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제3 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중 원아 수(「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 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 별표 1의3에 따라 매년 10월에 공시 되는 연령별 원아 수 현원의 합 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100 명 미만인 유치원을 말한다. 제8조의2(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배치기준) ① 법 제4조제1호 및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급 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

유치원에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영양교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(국립·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「교육공무원임용령」 제9조제1항에 따라 영양교사로 선발된 사람으로 한다)을 1명 이상 교사로 두어 제8조 각 호의 직무를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아 수가 200명 미만인 유치원으로서 같은 교육지원청(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을 말한다)의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2개의 유치원마다 공동으로 제1항에 따른 교사를 1명씩 둘 수 있다.